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721
----------	-------

발의연월일 : 2026. 2. 10.

발 의 자 : 이건태 · 추미애 · 박상혁
주철현 · 전용기 · 박지원
박희승 · 정준호 · 진선미
이수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전략적 투자를 위하여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이 기본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
여 5년 단위의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을 수립하고 과학기술자
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과학기술기본계획은 범정부 과학기술 정책의 기본이 되는
계획으로서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나 오늘날 과학기술 혁신을 둘러싼
환경은 급속하게 변화·전환되고 있어 5년 단위로 수립된 계획을 유
지하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과학기술기본계획이 과학기술 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역시 과학기술기본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할 수 있
도록 함으로써 급변하는 과학기술 환경에 보다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및 제7조의2 등).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에”를 “제6항에”로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⑤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에”를 “제5항에”로, “수립과 추진”을 “수립, 변경 및 추진”으로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7조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변경된 때에는 중장기투자전략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중장기투자전략 변경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의2제2항제2호 중 “제7조제5항에”를 “제7조제7항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의3 중 “제7조의2제3항에”를 “제7조의2제5항에”로 한다.

제12조의2제3항 전단 중 “제7조의2제3항에”를 “제7조의2제5항에”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제7조의2제3항에”를 “제7조의2제5항에”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신 설>

<신 설>

③ · ④ (생 략)

⑤ 중장기투자전략 및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과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2(연차보고서의 작성) ① (생 략)

② 제1항의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 략)

2. 제7조제5항에 따라 종합된 전년도 추진실적 및 해당 연도 시행계획

음)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7조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변경된 때에는 중장기투자전략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중장기투자전략 변경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 ⑥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⑦ -----제5항에 -----수립, 변경 및 추진-----
-----.

제8조의2(연차보고서의 작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2. 제7조제7항에-----

2의2. (생 략)	2의2. (현행과 같음)
2의3. <u>제7조의2제3항에</u> 따른 연 도별 시행계획	2의3. <u>제7조의2제5항에</u> ----- -----
2의4. ~ 7. (생 략)	2의4. ~ 7. (현행과 같음)
제12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 예 산의 배분·조정 등) ①·② (생 략)	제12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 예 산의 배분·조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제 2항에 따른 중기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u>제7조의2제3항에</u> 따른 국가연구개발투자의 방향 과 기준을 매년 3월 15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 및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 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업 계획서 검토 대상·방법 및 절 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 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한다.	③ ----- ----- ----- ----- <u>제7조의2제5항에</u> ----- ----- ----- ----- ----- ----- ----- ----- -----.
④ ~ ⑨ (생 략)	④ ~ ⑨ (현행과 같음)
제21조(과학기술투자의 확대) ① (생 략)	제21조(과학기술투자의 확대) ① (현행과 같음)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필요 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	② ----- ----- <u>제</u>

<u>7조의2제3항에</u> 따른 국가연구 개발투자의 목표치와 추진계획 을 기본계획 및 중장기투자전 략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 ⑤ (생략)	<u>7조의2제5항에</u> ----- ----- ----- -----. ③ ~ ⑤ (현행과 같음)
---	---